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6월 27일(목)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5. 14. 정기혁 의원 외 10명 발의 (의안번호 302호)
- 나. 회부일자: 2024. 5. 28.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 【2024. 6. 10. 상정·수장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정기혁 의원)

가. 제안이유

- 1)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 규정」을 폐지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출석하는 증인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 및 비용의 종류(안 제1조 및 제2조)
- 2) 비용 지급의 예외 (안 제3조)
- 3) 비용의 지급기준 (안 제4조)
- 4) 비용 지급 일수의 계산 (안 제5조)

5) 비용 지급의 제한 기준 (안 제6조)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9조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2)
- 2) 협조부서 : 의회사무국
- 3) 예산조치 : 필요시 편성
- 4) 입법예고 : 2024. 5. 17. ~ 2024. 5. 2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한상규)

- 1994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조항이 신설되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증인의 여비 등 실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 본 조례 1991년에 의회규정으로 제정된 기존의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 비용지급에관한규정」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성북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안 제4조), 지급 일수의 계산 (안 제5조), 비용 지급의 제한 기준 (안 제6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함으로써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독려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 기타 상위법령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다고 검토되나
- 다만, 조례 목적규정의 약칭 정의 사용을 바로잡기 위하여 안 제1조의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를 “참고인”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항의 “증인등”을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① 지방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위원회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에서 증인·참고인으로서 증언·진술한 사람이 그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사본을 내줄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 목적 조항은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약칭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약칭 정의 조항을 제1조에서 제2조로 수정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의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를 “참고인”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항의 “증인등”을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로 수정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302호 관련
----------	------------

발의연월일 : 2024년 6월

발 의 자 : 운영위원회

1. 수정이유

- 목적 조항은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약칭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바, 약칭 정의 조항을 제1조에서 제2조로 수정

2. 주요내용

- 안 제1조의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를 “참고인”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항의 “증인등”을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로 수정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을 “참고인”으로 한다.

안 제2조제1항 중 “증인등”을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원안·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감정인 및 <u>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u> 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참고인</u> ----- ----- ----- -----.
제2조(비용) ① <u>증인등</u> 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② (생략)	제2조(비용) ① <u>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u> ----- -----. ② (원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비용 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구분란의 제2호를 준용한다.

제5조(비용 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머무른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비용 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6. 27.(목)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5. 14. 이호건 의원 외 9명 발의 (의안번호 303호)

나. 회부일자: 2024. 5. 2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24. 6. 10.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호건 의원)

가. 제안이유

1) 질문요지서 송부기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질문요지서 송부기한 “24시간 전까지”에 토요일·공휴일 제외(안 제51조제2항)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 협조부서 : 의회사무국

3)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4) 입법예고 : 2024. 5. 17. ~ 2024. 5. 2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한상규)

- 구정질문은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본회의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 전반에 걸쳐 비판과 대안제시를 통해 행정쇄신을 촉구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에 해당하는바,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성북구의회 구정질문 요지서 송달기한을 질문 시간 24시간 전까지로 규정하여 송달기간 계산을 시(時) 기준으로 하고있는데 기간의 만료점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기간계산에 포함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에서 질문요지서 송달기한을 ‘토요일 및 공휴일’의 기간이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관공서(내지 공무원)가 휴무하는 날의 법적 근거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의사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기에 검토 결과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관계법령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약칭: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석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약칭: 공휴일법)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24시간 전까지”를 “24시간 전(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1조(구정질문) ① (생략)	제51조(구정질문)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u>24시간 전</u> 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② ----- ----- ----- ----- <u>24시간 전</u> <u>(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u>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